

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45 |
|----------|------|

2018년 4월 9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
- 나. 제안일 : 2018년 3월 20일
- 다. 회부일 : 2018년 3월 26일
- 라. 상정일 : 제2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18년 4월 9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평생교육국장 주용태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, 2018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
-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, 2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
-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
2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7조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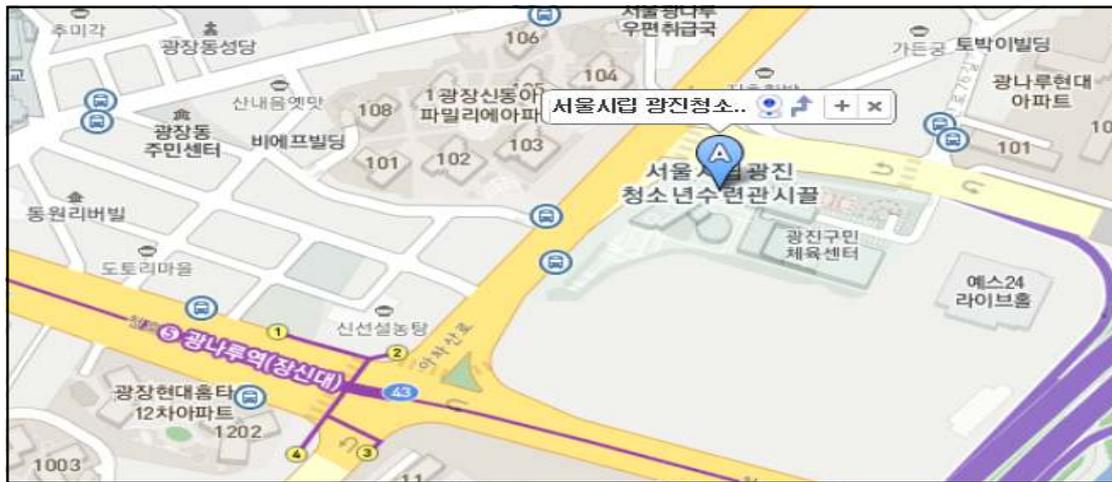
-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)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
- 출장 성교육, 거리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
-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

4)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
- 시설규모 : 195㎡
- 주요시설 : 교육관, 강의실, 사무실
- 위치도



5) 민간위탁기간 : 2년(2018.7.1~2020.6.30.)

6)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흥사단)

7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70백만원(2018년, 국비 74백만원, 시비 96백만원)
- 산출근거 : 인건비 132백만원, 운영비 38백만원

8)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(이하 '광진성문화센터')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, 위탁기간의 만료(2018.6.30.)로 (사)흥사단과 2년간(2018.7.1.~2020.6.30.)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<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>

- 소재지 :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
- 시설규모 : 195㎡
- 주요시설 : 교육관, 강의실, 사무실
- 위탁 사무 내용
 -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 -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
 - 출장 성교육, 거리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
 -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
- 위탁기간 : 2년(2018.7.1~2020.6.30.)
-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흥사단)
- 소요예산 : 170백만원(2018년, 국비 74백만원, 시비 96백만원)

- 성문화센터는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1)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8개의 성문화센터가(시립5, 구립1, 민간2) 운영되고 있음.

1)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"성교육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<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추진 경과 >

- 2007.7.1.~2010.7.31. (사)밝은청소년지원센터(3년)
- 2010.8.1.~2013.6.30. (사)흥사단(3년)
- 2013.7.1.~2015.6.30. (사)흥사단(2년)
- 2015.7.1.~2018.6.30. (사)흥사단(3년)

-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전달과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성문화센터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는 필요하다고 하겠으며,
-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도입되었다고 하겠음.
- 그러나, 광진성문화센터의 경우는, 동일한 수탁기관에 장기간 위탁함에 따른 시립시설의 수탁기관 종속화로 공공성은 저하되고,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법인 내 인사발령 등으로 서울시의 위탁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,
- 평생교육국은 위탁시 공익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, 수탁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기관 및 직원의 자격기준²⁾과 반기별 시장에게 제출되는 운영실적³⁾의 평가방법, 위탁목적 달성수단의 적정성, 평가기준 설정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.

2)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제2항의 별표2, 제3항의 별표3

3)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(운영실적³⁾의 제출)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(半期)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4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8년 3월 2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, 2018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, 2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나.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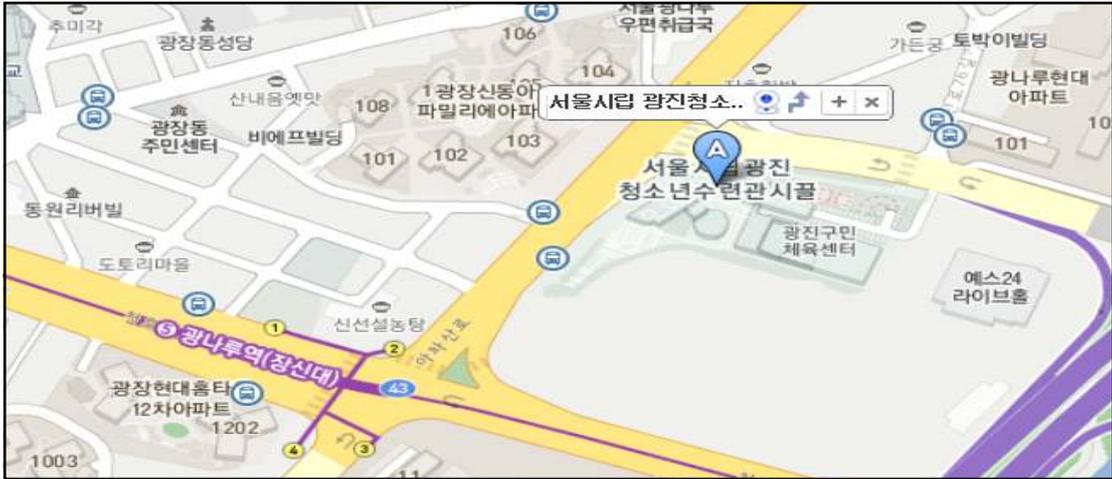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
- 출장 성교육, 거리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
-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
- 시설규모 : 195㎡
- 주요시설 : 교육관, 강의실, 사무실

○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년(2018. 7. 1~2020. 6. 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흥사단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170백만원('18년, 국비 74백만원, 시비 96백만원)

○ 산출근거 : 인건비 132백만원, 운영비 38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"성교육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"성교육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
 - 2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·운영하는 단체
 - 3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,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
 - 4.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이 있는 단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선지현 (☎2133-4130)

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

□ 민간위탁 개요

○ 추진근거
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○ 사업내용 :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
- 소재지 :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
- 시설규모 : 195㎡
- 주요시설 : 교육관, 강의실, 사무실
- 주요사업 :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, 유치원, 각급 학교, 청소년시설 등 출장 성교육, 성교육관련 조사·연구 등
- '18년예산 : 170백만원

○ 추진경과

- 1차 : 2007. 07. 01.~2010. 07. 31.(3년, (사)밝은청소년지원센터)
- 2차 : 2010. 08. 01.~2013. 06. 30.(3년, (사)홍사단)
- 3차 : 2013. 07. 01.~2015. 06. 30.(2년, (사)홍사단)
- 4차 : 2015. 07. 01.~2018. 06. 30.(3년, (사)홍사단)

□ 성과평가 개요

- 수행기관 :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(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)
- 평가기간 : 2017. 1 ~ 10월
- 대상기관 : 시립청소년시설 53개소
- 평가방법 :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

□ 평가결과

○ 결과 요약

(단위 : 점)

| 운영 및 관리 (16) | 청소년 프로그램 (12) | 인사 및 조직 (18) | 시설환경 및 안전 (8) | 대외협력 및 홍보 (11) | 발전 노력 (5) | 특화 사업 운영 (20) | 우수 사례 (10) | 합계 (100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15.2 | 12 | 17 | 8 | 9.8 | 5 | 20 | 9 | 96 |

○ 세부 내용

(단위 : 점)

| 평가영역 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평가 배점 | 평가 점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1. 운영 및 관리 | 1.1. 기관 운영계획 | 1.1.1.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| 4 | 4 |
| | | 1.1.2. 운영위원회 체계 및 활동 | 4 | 4 |
| | 1.2. 기관운영 및 관리 | 1.2.1. 청소년사업비 집행 비율 | 4 | 4 |
| | | 1.2.2. 컨설팅 및 평가개선사항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| 4 | 3.2 |
| 2. 청소년 프로그램 | 2.1.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| 2.1.1.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| 4 | 4 |
| | | 2.1.2. 프로그램 수행과정 | 4 | 4 |
| | | 2.1.3. 프로그램 평가 | 4 | 4 |
| 3. 청소년 이용 및 참여 | 3.1. 청소년 시설이용 | 3.1.1. 청소년이용률 | - | - |
| | | 3.1.2.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| - | - |
| | 3.2. 청소년참여 활성화 | 3.2.1.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| - | - |
| 4. 인사 및 조직 | 4.1. 청소년지도사 확보 | 4.1.1. 청소년지도사 법적 기준 준수 | - | - |
| | | 4.1.2. 직원확보 수준의 적정성 | - | - |
| | | 4.1.3. 청소년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 수준 | 4 | 4 |
| | 4.2. 직원교육 및 복리후생 | 4.2.1.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 시간 | 5 | 4 |
| | | 4.2.2. 직원 안전 교육 | 4 | 4 |
| | | 4.2.3. 직원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적절성 | 5 | 5 |
| 5. 시설환경 및 안전 | 5.1. 시설환경 및 안전 | 5.1.1. 시설환경의 쾌적성 | 4 | 4 |
| | | 5.1.2. 시설 안전관리의 적절성 | 4 | 4 |
| 6. 대외협력 및 홍보 | 6.1. 대외협력 및 홍보 | 6.1.1. 대외협력 및 연계정도 | 6 | 4.8 |
| | | 6.1.2.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| 5 | 5 |
| 7. 발전노력 | 7.1. 발전노력 | 7.1.1. 전반적 발전노력 | 5 | 5 |
| 8. 특화사업 | | 8.1.1. 청소년성교육 프로그램 | 5 | 5 |

| 평가영역 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평가 배점 | 평가 점수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8.1.2 성교육서비스의 충실성 | 5 | 5 |
| | | 8.1.3 특화프로그램 차별성과 참신성 | 5 | 5 |
| | | 8.1.4 개인정보관리 보안유지 수준 | 5 | 5 |
| | 우수사례 | | 10 | 9 |
| | 총점 | | 100 | 96 |

□ 평가결과보고서

| 평가영역 | 평가결과 |
|----------------|---|
| 1. 운영 및 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장기 발전계획과 환류체계를 갖출 필요있음 ○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있음 ○ 1-2-1 지표 오류를 수정함(51%, 회계의 독립성이 요구됨) |
| 2. 청소년 프로그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청소년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|
| 3. 청소년 이용 및 참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이사항 없음 |
| 4. 인사 및 조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이사항 없음 |
| 5. 시설환경 및 안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이사항 없음 |
| 6. 대외협력 및 홍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외협력 및 연계지원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필요있음 |
| 7. 발전 노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사례 제출시 우수사례 심사기준에 맞추어 기술할 필요있음 |
| 8. 연계 및 지원협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이사항 없음 |

□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

-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재계약 협약 체결
 -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'18. 6월말까지 재계약 협약 체결
-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
 -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
 -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